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7월 4일, 박용갑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7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8. 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2. 1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박용갑)

현행법은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사업점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받을 운임이나 요금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운 운임에 대하여 가맹금을 징수한 것을 불공정행위라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와 같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해 중개한 승객이 아닌 길거리 대기·배회영업 과정에서 받은 승객에게 받은 운임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수수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개계약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종수)

가. 플랫폼가맹사업자 가맹수수료 수취 제한(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1) 검토의견

개정안은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이 여객으로부터 받은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가맹수수료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요금) ① ~ ⑥ (생략) <u><신설></u>	제49조의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요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가맹점이 여객에게 받은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가맹수수료 등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¹⁾,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 3가지 종류로 구분됨²⁾.

이 중 플랫폼가맹사업은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하며,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만 운송가맹점 가입 가능³⁾)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4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제49조의11에 따른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

제49조의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아 플랫폼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법 제49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즉, 택시운송사업자를 운송가맹점으로 모집하여,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 소속 운송가맹점의 택시(이하 “가맹택시”)에게 여객을 배정하여 운송서비스 또는 운송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형태의 사업임.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

세부 업종	사업내용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 운송 (과거 타다·우버를 제도화한 유형)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택시사업자를 운송가맹점으로 모집하여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유상 운송 (카카오T블루 등)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	여객과 운송사업자를 중개하는 중개서비스만 제공 (카카오T 등)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사업자를 단순히 중개만 하는 플랫폼중개사업은 여객의 콜을 택시기사가 수락하는 경우 배차되는 방식이지만, 현재 다수의 가맹택시가 속한 플랫폼가맹사업의 사업모델은 여객의 콜이 가맹택시 1대에 강제 배차되는 방식임⁴⁾.

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영업표지(상호, 상표 등 포함)를 사용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정한 브랜드화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함. 그리고,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플랫폼 이용료, 차량관제프로그램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가맹금⁵⁾에 해당하는 가맹수수료를 플

4) 현재 전국 가맹택시(9.1만대)의 80% 이상이 강제 배차 방식의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음.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

랫폼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함.

2025년 7월 기준, 전국에 16개의 플랫폼가맹사업체가 있으며 이 중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는 9개 플랫폼가맹사업자에 속한 가맹택시는 76,178대로서 전국 가맹택시 총 91,543대의 83.2%를 차지하고 있음.

가맹수수료는 플랫폼가맹사업체마다 정하는 기준은 다르나, 대부분의 업체(16개 업체 중 14개 업체)에서 운임 수입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있고,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는 플랫폼가맹사업체(9개 업체)의 가맹수수료 수준은 운임 수입의 2.8%(일부 3.3%) 수준임. (참고1. 참조)

가맹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운임 수입과 관련하여, 가맹택시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을 배정받아 영업하는 ‘가맹영업’ 외에도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중개 운송플랫폼(타사의 호출앱)을 통해 여객을 배정받아 운송하는 ‘중개영업’ 또는 운송플랫폼

한다.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작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회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이용 없이 운행·대기 중 여객을 태우는 종전의 ‘배회영업’을 모두 할 수 있는데, 현재 카카오T 플랫폼 이용 플랫폼가맹사업자(9개 업체, 가맹택시 약 7.6만대)들은 가맹택시가 가맹영업으로 얻은 운임 수입뿐 아니라, 중개영업이나 배회영업으로 얻은 운임도 포함한 모든 운임 수입에 일괄하여 가맹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가맹택시의 타사 호출앱을 이용한 중개영업이나 배회영업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징수한 행위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6)를 위반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운송가맹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하여 해당 2개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⁷⁾하였음. (참고2. 참조)

이에 개정안은 가맹택시가 가맹영업 외의 다른 경로로 얻은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결정례에 비추어 타당한 측면이 있음.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7) 대구·경북DGT모빌리티 2.3억원('25.1), 전국KM솔루션 38.8억원('25.5)

다만, 이에 대해서는 배회영업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가맹 택시의 배회영업이 증가하게 되어(호출앱을 끄고 다님) 호출승객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승차거부 등의 발생으로 승객의 편의가 저하될 것이라는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는 의견⁸⁾이 있다는 점과 현재 상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 보임.

2) 국토교통부 의견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에 대한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 경과를 보아가며 입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카카오T 신규 가맹수수료 '2.8%'... 길거리 승객 태워도 똑같이 부과'(23.12.15 문화일보), '승객도, 택시도, 카카오도 좋아야...최우선은 승객 편의'(23.11.13 이데일리)

나. 가맹수수료 조정 개선명령 권한 도입(안 제49조의14제3호의2 신설)

1)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플랫폼가맹사업자에 대하여 운송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수수료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4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3의2.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에게 받거나 요구하는 가맹수수료 등의 조정</u>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으로서 플랫폼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은 각각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

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래관계를 가지며⁹⁾, 운송가맹점이 플랫폼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맹수수료는 「가맹사업법」 상 양자 간의 가맹사업거래 관계에서 가맹점사업자(운송가맹점)가 가맹본부(플랫폼가맹사업자)에 지급하는 가맹금¹⁰⁾에 해당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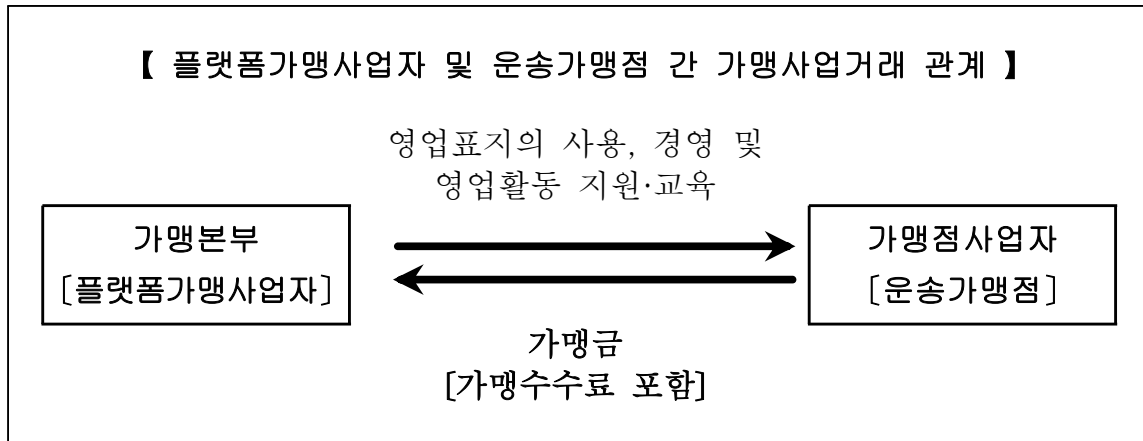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작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개정안은 이러한 가맹금에 해당하는 가맹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도 하여금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¹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플랫폼가맹사업자의 가맹수수료 관련 부당한 계약 등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상대적 약자인 운송가맹점 보호를 위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맹계약,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예치 및 가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15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등 가맹금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¹²⁾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참고3. 참조)

따라서 플랫폼가맹사업자의 가맹수수료 정책은 기본적으로 플랫폼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가맹사업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국토교통부 의견

가맹수수료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관계를 규정하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관리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개선조치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 12. 31.>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